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73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이원택・김병주・홍성국

주철현 · 최혜영 · 장철민

김남국 · 임호선 · 정청래

임오경·장경태·김민철

오영환 의원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7조제4항제5호).

법률 제 호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4항제5호 중 "지불"을 "지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	제17조(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
획의 수립) ① ~ ③ (생 략)	획의 수립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소유권 이전 시기, 이전 대	5
가, 이전 대가 <u>지불</u> 방법, 그	<u>지급</u>
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	
정하는 사항	